

2010학년도 제2학기

수 강 편 램

총 신 대 학 교

교육이념 및 목적 · 목표

교육이념	<p>총신대학교는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세워진 기독교 지도자 교육기관이다.</p> <p>본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개혁주의 교리에 따라 학문연구와 영성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사명으로 한다.</p>
교육목적	<p>본교는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개혁주의적 기독교신앙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학문의 이론과 그 실천방법을 연구, 교수함과 동시에 신앙인격의 도야를 통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에 봉사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p>
교육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성: 성경적 신앙에 기초한 고도의 기독교 학문을 수립한다. 2. 영성: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경건을 훈련한다. 3. 인성: 칼빈주의 세계관을 실천하여 사회와 교회에 봉사할 인재를 양성한다.

학과별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학 과	교육목적	교육목표
신 학 과	성경의 교훈과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교회와 민족과 세계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인격과 학문적 실력을 갖춘 일꾼 및 교역자의 양성을 위한 신학예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경건과 인격을 연마한다. ②개혁주의 신앙과 세계관에 입각한 신학적 기초를 쌓는다. ③교회와 민족과 세계속에서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 및 사회지도자가 되는데 필요한 학문적, 실천적 훈련을 실시한다.
기독교교육과	개혁주의 신학적 교육관에 기초하여 기독교 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접목시켜 교사로서 투철한 소명의식을 지닌 21세기 정보화, 세계화를 선도하는 기독교 종교교사와 기독교교육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①개혁주의 신학적 교육관에 기초한 교사의 소명의식 함양 ②시대정신을 선도하는 기독교 교육의 전문성과 실천 역량의 강화 ③인성, 영성, 지성의 균형적인 성장을 통한 기독교적 도덕성과 글로벌 마인드 연마 ④이론과 실천을 통합적으로 연구하여 교회, 학교, 사회 현장에 봉사할 수 있는 기독교교육 지도자로 양성
영어교육과	개혁주의적 기독교 교육관에 입각하여 중등학교와 각종 교육기관에서 봉사할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영어교사 및 영어교육 지도자의 양성	①기독교 영어교육과 관련된 이론 및 실재를 교육함으로써 기독교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 배양 ②영어교육과 관련된 제반 이론을 기초로 하여 효과적인 중등 영어 교수방법을 탐색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교육실습 강화 ③영어전용수업을 목표로 하여 중등 영어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영어활용 능력을 함양하고, 영어 사용국의 심도있는 문화 이해의 도모
역사교육과	기독교 역사관에 입각하여 중등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봉사하는 유능한 역사교사 양성	①중등학교 역사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성실한 연구 능력 함양. ②교실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 수업방법 탐구. ③기독교역사관의 심화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봉사정신 고양.
유아교육과	개혁주의 교육관에 입각한 전인적 인격과 전문성을 갖춘 유아교사 양성	①교육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②다양한 실습 현장 및 경험을 통한 실천적 유아교사 능력 함양. ③정보화 국제화 지역화에 적응능력을 구비한 미래지향적 유아교사훈련. ④교사의 사명의식 함양.

교회음악과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신앙인격과 학문적 실력을 갖춘 교회음악 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개혁주의 신앙에 근거하여 교회음악의 학문적·실천적 훈련을 쌓는다. ②음악 이론과 실제의 이상적인 조화로, 질적으로 한층 수준 높은 전문 연주자로서의 교회음악인을 양성한다. ③학교와 교회의 실제적인 결합을 통하여 교회 현장에서의 교회음악의 활용방법을 습득한다.
아동학과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국제적 감각과 실력을 갖춘 아동·가정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기독교 아동학에 관한 제반이론을 기초로 하여 기독교 아동 교육 및 선교실습을 강화한다. ②일반아동학에 관련된 아동상담 및 아동·가정교육의 기초이론과 전문지식을 교육한다. ③아동·가정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교계 및 세계인류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교육을 함양한다.
사회복지학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토대로 하여 국제적 감각의 전문성과 인격을 갖춘 능력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사회봉사와 관련된 일반이론 및 국내외 제반실무에 대한 국제적 감각의 전문지식을 학습한다. ②기독교 사회복지의 능력있는 전문인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실무훈련을 실시한다. ③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기독교적 가치확립을 지향한다. ④복지사회의 건설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완수에 이바지할 실천적 사회복지 전문 지도자를 양성한다.

교양교육 목적 및 목표

목 적	목 표
<p>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전인적 인격과 자기 표현력 함양 및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여 기독교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교양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성숙한 인격체가 지녀야 할 영성과 품성을 교육한다. ②정보화 사회에 요청되는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한다. ③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국가·사회·교회에 봉사할 사명자를 양성한다.

2010학년도 제2학기 학사일정표

8월 9일(월)-13일(금)	휴학·복학, 등록 기간
8월 16일(월)-20일(금)	수강신청 기간
8월 23일(월)	개강
8월 24일(화)-27일(금)	심령수련회
8월 30일(월)- 9월 3일(금)	수강신청 정정 기간
9월 17일(금)	수강신청철회 마감일
10월 11일(월)-15일(금)	학기중간 주간
11월 15일(월)-19일(금)	전과, 다전공, 부전공 신청 기간
11월 22일(월)-26일(금)	교회음악과 실기시험
11월 29일(월)-12월10일(금)	보강 및 기말고사 기간
12월 13일(월)	동계방학 시작

수 강 신 청 안 내

1. 수강신청기간 및 신청입력

- 1) 수강신청기간 : 2010년 8월 16일(월) 09:00 - 20일(금) 17:00 *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
- 2) 대 상 : 각 학과 1, 2, 3, 4학년 공통 (ID : 학번, Password : 주민번호 뒷번호 7자리 또는 개인적으로 변경한 번호)
- 3) 장소 및 시간 : 인터넷 사용 - 신관 304, 306호(전산실습실 : 09:00-17:00)
- 4) 신청시작시간 : 과목수강자 - 8월 16일(월) 09:00부터
4학년 - 8월 16일(월) 09:30부터
3학년 - 8월 16일(월) 10:00부터
2학년 - 8월 16일(월) 10:30부터
1학년 - 8월 16일(월) 11:00부터
- 5) 인터넷 주소 : www.chongshin.ac.kr (인터넷이 연결된 곳은 어디나 가능)
- 6) 인터넷 이용시 주의사항 :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시 동시에 많은 인원이 접속할 경우 수강신청 입력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을 중단하고 잠시 후 다시 접속하여 수강신청 사항을 입력하기 바랍니다.(문의전화 : 02-3479-0256/교무과, 02-3479-0219/전산과)
- 7) 수강신청요령 :
 - ① 「2010- 2학기 수강편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과 2010-2학기 수강편람 변경(정정)사항(홈페이지 공지)의 내용을 먼저 숙지하기 바랍니다.
 - ②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 수강로그인 화면에서 ID와 Password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수강신청’ 을 선택하여 수강신청사항을 입력합니다.
※ 수업계획서는 홈페이지 ‘대학’ 에서 각 학과별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2. 수강신청 전 유의사항

- 1) 수강신청을 하기 전 반드시 수강신청 안내사항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 3) 수강신청은 반드시 수강신청 기간에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정정기간에는 정정만 가능합니다.
- 4) 재이수과목 신청시에는 기수강과목과 동일한 코드의 과목은 자동으로 재수강처리가 되나 변경된 과목(구교육과정, 대체과목 등)의 경우 재수강 처리가 되지 않으니, **기수강 과목의 코드, 학년, 학기 등 모든 사항을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수강과목 코드는 ‘성적조회’ 에서 확인 할 수 있음)

★ 위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당해학기에** 재수강 처리가 되지 **않아** 기존의 과목이 성적표에 그대로 존재하게 되어 **추후 개별 졸업사정시 재수강처리 될 경우 (기존과목삭제 및 재이수과목은 최고A° 이하로 정정처리됨)** 졸업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강과목 입력시 이미 폐강된 과목이라 하더라도 과목 입력에 문제가 없으므로 재차 확인하여 입력바랍니다.

- 5) 4학년 학생은 수강신청 전 ‘이수구분별 학점현황’ 표를 본교 홈페이지(학생로그인-졸업관리-이수구분별 학점현황표)에서 참고하여 반드시 이수한 전과목을 확인하고 **졸업학점에 대하여 이상 유, 무를 확인한 후** 수강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 6) 강좌번호가 다르더라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내용이 같은 강좌는 중복수강 할 수 없으며, 중복된 수강 과목은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 7) 수강편람의 교육과정 내용은 2010학년도 1학기 변경사항을 기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전 해당 학년도의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대학->대학소개->학과 ①교육과정변경현황 ②교육과정-영역별 교육과정 또는 학년, 학기별 교과개설표 ③학점이수기준표를 참고바랍니다.
- 8) 학과별 교육과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각 학과 사무실로 하기 바랍니다.

3.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1) 수강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수강신청은 학칙 제40조 학사내규 제31조에 의거 반드시 소정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3) 수강편람을 학교 홈페이지 ‘학생서비스 -> 학사안내 -> 수업’ 에서 다운받아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 신청한 다음, 입력 저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4) 동일 교과목이라도 반드시 지정된 반에서 수강해야 하며, 다른 반에서 수강 할 경우 성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재수강자, 편입학자, 다전공자, 부전공자는 제외합니다.
※교양필수 과목 중 동일한 과목이 학과별 지정없이 분반되어 있는 경우는 선택하여 수강이 가능함.
- 5) 신규개설된 교양필수 과목 Listening and speaking II와 Reading and writing II는 교회음악과반과 외국인반을 제외하고는 학과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 수강신청 입력 중 오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 7)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의 성적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 8) 재수강하였을 시에 재수강 전의 성적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 9) 교회음악과 - ① 전공실기 과목은 1~Ⅷ까지 반드시 순서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② 전공실기, 연주, 실기반주, 합창·합주 과목은 1,2학기에 모두 개설되므로, 학기를 잘 확인하여 선택하기 바랍니다.
- 10) 복학생은 휴학전 과락(F)된 필수과목이 폐강되었을 경우 교무과에 상담 후 대체과목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 11) ‘영적지도자훈련’ 과목은 2003학번까지는 ‘1학점’ 으로, 2004학번부터는 ‘0학점/Pass’ 로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하여야 합니다.
- 12) 영어교육과의 1학년 전공 중 아래의 과목은 타과의 학생들은 수강할 수 없습니다.
English Speaking I, II - 다, 부전공자 수강가능 / 영어어휘 - 다전공자 수강가능 (부전공자 수강불가)
- 13) 교양필수 과목 「실용영어 I-Ⅳ」 재수강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구 분	2009학번까지	2010학번부터	비고
교양필수	실용영어 I (1학점)	English listening and speaking I (1학점)	재수강시 대체과목임
	실용영어 II (1학점)	English listening and speaking II (1학점)	재수강시 대체과목임
	실용영어 III (1학점)	English reading and writing I (1학점)	재수강시 대체과목임
	실용영어 IV (1학점)	English reading and writing II (1학점)	재수강시 대체과목임

*구(舊) 교양필수과목(학점) 중 「대학영어 I (교필)(2), 「대학영어 II (교필)(2) 또는 「영어회화 II (교필)(2)-단, 2003-2학기 이수만 해당」 재수강자는 교무과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14) 「실용영어청해 I」, 「실용영어청해 II」를 미수강 및 재수강하는 경우는 교양선택 과목중 1학기에는 「TOEFL특강 I」, 2학기에는 「TOEFL특강 II」를 수강하여야 합니다. (English Listening (3), TOEFL특강(2), 영어청취연습(1)은 2008학년도 이수자에 한해서만 적용됨)

해당과목개설현황 및 대체인정 년도/학기	2003년도까지	2004년도▶2007년도	2008년도 1학기	2008년도 2학기	2009년도부터
교양필수 과목명(학점)	LAB I (1)	실용영어청해 I (1)	English Listening (3) <개설이수구분명-영어교육과 전공(선택이수)>	TOEFL특강(2) <개설이수구분명-교양선택>	TOEFL특강 I (1) <개설이수구분명-교양선택>
	LAB II (1)	실용영어청해 II (1)		영어청취연습(1) <개설이수구분명-교양선택>	TOEFL특강 II (1) <개설이수구분명-교양선택>

15) 교양과목의 ‘기독교기본교리’는 신학과 학생들은 수강할 수 없으며, ‘역사의 이해’는 역사교육과 학생들은 수강할 수 없으며, ‘교회음악입문’은 교회음악과 학생들은 수강할 수 없습니다.

16) 학기당 수강신청 최대학점(4,5번의 ‘수강신청학점 안내’ 참조)을 초과 신청할 경우 학점을 취득하여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초과 신청 과목은 교무과에서 교양 선택, 전공 선택 과목 순으로 임의로 취소 처리합니다. (초과학점 신청 대상자 제외)

17) 학사경고자는 15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습니다.

18) 타학과 인정 전공과목은 본 수강편람의 “18. 타학과 인정교과목 안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19) 학점 특별인정으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수강편람의 “32. 학점특별인정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0)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연계 교과목 신청 안내

수강신청은 9학점까지 할 수 있으며, 취득학점 중 6학점까지는 학사학위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할수 있다. 해당 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3학점까지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미 학사학위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은 과목은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할수 없다. 수강신청은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총 평점평균(교회음악과는 전공실기) 3.7 이상인자로서 대학 교무처장과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당 수강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원 연계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단 Th.M과정의 교과목은 제외한다.

21) 구약개요 I, II, 신약개요 I, II, 철학의 이해 과목을 신학과 2003학번까지는 교양필수로, 2004학번부터 2006학번까지는 전공으로, 2007학번부터는 교양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2) ‘실천’은 교양학과 1학년에 개설되어 있으니 본인의 학년/학기(8학기 기준)에 맞게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학기 신청 : 학사 학기와 다른 학기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일단 학사학기에 맞게 신청 후 교목실(중 202호/전화3479-0311)로 문의 바랍니다.

※실천 재수강 : Fail 처리된 실천학기를 재수강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8학기 정규과정을 모두 마친 후 9학기부터 재수강 신청 가능합니다.

정상학기(8학기) 내에는 Fail 처리된 실천을 재수강 할 수 없습니다. 단, 채플 미취득자훈련(계절학기 : 채플 10회 이상 참석자 신청 가능)을 통해서는 실천을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23) 학수번호분류를 위해 한 학과의 동일 교과목은 하위 학년에 학수번호를 부여함(예: 신학과 3,4학년 공통개설 과목- 3학년에 개설)

24) 2009년 8월 27일자 교육과학기술부 교직원 관련 고시개정 안내

▶ 사범계(교육계)열 학과 2009학번부터는 전공(다전공 포함)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최소 8학점이상(각 학과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해당하는 과목은 필수 이수과목임)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앞의 필수 이수과목 및 최소 이수학점 중 어느 1과목 또는 1학점이라도 미이수시 졸업과 교원자격증 수여가 모두 불가함

4. 수강신청학점 안내 (1999학번 이전)

1)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1 ~ 3학년 : 18학점 ~ 21학점

4학년 : 최저 14학점, 최대 24학점

2) 초과학점 신청 : 직전학기 성적이 3.70 이상인 자는 최대 24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학점 신청 : 4학년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평점이 3.50 이상인 자는 최소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수강신청학점 안내 (2000학번 이후)

1) 매학기 수강할 수 있는 학점수는 17학점 ~ 19학점까지 입니다.

2) 7학기 이상 등록한 자는 최저 9학점 이상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편입생도 인정).

3) 초과학점 신청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3.25 이상인 자로서 교육과정상 19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22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조기졸업 희망자로서(6학기,7학기)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3.85 이상인 자는 최대 25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초과학점신청서” 제출)

6. 수강신청 정정, 확인 및 변경안내

1) 수강신청정정은 8월 30일(월) - 9월 3일(금) 에 반드시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정정 입력을 한 다음 전산 상으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수강신청정정 기간이 지난 후 교무과에서 배부하는 최종 수강신청확인서에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서명하여 각학과 학년별로 교무과에 제출합니다.

※ 폐강된 과목에 대한 정정신청은 9월 6일(월) 14시까지 할 수 있음.

3)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수강신청사항이 확정되므로 일체의 정정은 불가합니다.

7. 수강과목철회

1) 수강과목의 철회는 수강신청정정 후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지정된 기간(학기시작부터 4주 이내)에 교무과에 수강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수강과목을 철회한 대신 새로운 과목을 추가할 수 없음.)

2) 성적증명서상 수강철회 과목명 및 철회표시(W)는 2009년 6월 5일 이후부터 삭제됩니다.

8. 수강신청인원 제한과목 안내

1) 수업여건상 수강신청 인원을 제한하는 과목은 수강 신청하는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2) 신학과와 모든 과목은 90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9. 수강편람 약어 표기

정어	약어	정어	약어
신학과	신	교회음악과	음
기독교교육과	기	아동학과	아
영어교육과	영	사회복지학과	사
역사교육과	역	교양(교직)과	교
유아교육과	유	수강불가	(X)

10. 계절학기에 관한 사항(학칙 제16장 85조 및 학사내규 제14장 50조 참조)

1. 목적 : 학점취득 기회 및 성적개수 기회부여, 학문의 집중연구 및 이수영역확대, 교양 및 전문지식습득, 수업결손 및 학기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
2. 개설시기 및 수강인원 : 동·하계 방학 기간 중 실시하며, 수강생은 과목당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학점교류대학 강좌는 별도 적용함).
3.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 이수학점은 6학점(학점교류대학 포함)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수한 자는 그 학점을 졸업학점에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4. 수업시간은 3주 이상으로 하며, 1학점당 강의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합니다.
5. 수강료 환불 : 수강신청 후 환불은 계절학기 개강 전까지 요청하는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개강 이후에는 환불이 절대 불가하고, 수강철회는 수업 1/4선까지만 가능합니다.

11. 교원자격증취득안내

홈페이지-학생서비스-학사안내-대학-학적

12. 학점포기 제도 안내

- (1) 신청자격 : 4학년 2학기(수업연한 내) 재학생
- (2) 신청기간 : 매 학기 성적정정 기간 내
- (3) 포기가능 학점수 : **6학점 이내**
- (4) 포기제외(불가)과목
 - ① 편입시 전적대학의 학점을 인정받은 과목
- (5) 제한사항
 - ① 학점포기는 재학기간(수업연한내 4-2학기)동안 1회만 가능함.

- ② **과목수강자**(졸업소요학점 미이수자)와 **미졸업자**(졸업요건 및 졸업인증 미이수자)는 **신청불가함**.
 - ③ 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수강 할 수 없다**.
 - ④ 재입학 전에 이미 학점포기를 했던 **재입학생과, 조기졸업예정자는 학점포기가 불가함**.
 - ⑤ 포기시점의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2.00 미만인 자는 학점포기가 불가함**.
 - ⑥ **신대원무시험진학시** 학점포기한 과목은 **포기 직전의 원래 성적만을 반영함**.
(★졸업전 학점포기한 졸업생은 포기직전의 원래성적만을 반영하여 재산정함.)
 - ⑦ 졸업시 성적우수시상을 위한 성적산정에서는 학점포기직전의 원래점수를 기준함.
- (6) 신청서류 : 학점포기신청서(소정양식)1부, 성적증명서1부

13. 이수구분 변경 제도 안내

상황 : 학과의 교육과정이 빈번하게 변경됨으로 인해, 학번에 따라, 학생들의 이수해야 할 과목의 이수구분이, 전혀 다르게 편성, 이수함으로, 졸업에 문제가 되어 왔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무위원회에서는 학교의 학사내규를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이수구분 변경제도를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1) 시행일시 : 2007년 12월 27일 이후부터
- 2) 대 상 : 재학생 전원
- 3) 대상과목 : 이수한 과목 중 이수구분은 상이하나 명칭이 동일한 과목, 대체과목
- 4) 제출시기 : 매학기 계절학기 성적정정기간
- 5) 제 출 처 : 대학 교무과 수업계
 - * 신청서양식 : 홍교홍페이지 - 학생서비스 - 각종서식 - 대학수업
 - * 제한: 변경 희망하는 과목이 해당 이수구분에 개설되지 않을 경우 변경대상에서 제외됨.

14. 학수번호 분류

2008-2학기부터 총신대학교 학수번호가 새로이 분류되어 정리되었습니다. 과도기적 상황에서 앞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시간별강좌목록, 학과별 교육과정, 수강신청확인서, 수강신청 화면에서 기존의 과목별 강좌번호와 학수번호가 함께 표기되어집니다.

- 대분류는 개설학과, 학년별 학기, 이수구분, 영역, 교과목 번호 순으로 함
- 개설학과는 9개 학과의 영어 이니셜로 구분함 즉, 신학과(TH), 기독교교육과(CE), 영어교육과(EE), 역사교육과(HE), 유아교육과(KE), 교회음악과(CM), 아동학과(CS), 사회복지학과(SW), 교양교직과(LE)
- 학년별 학기는 1학년 1학기 1, 2학기 2, 2학년 1학기 3, 2학기 4, 3학년 1학기 5, 2학기 6, 4학년 1학기 7, 2학기 8, 1,2학기 공동개설 0 로 구분함
- 이수구분은 공통필수 A, 교양필수 B, 교양선택 C, 일반선택 D, 전공필수 E, 전공선택 F, 교직 G로 구분함
- 영역은 각 학과별 전공 영역으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함

- 교과목 번호는 각 학과별로 학년, 학기, 이수구분, 영역별로 내림차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함
- 한 학과에 동일 교과목은 하위 학년에 부여된 학수번호를 부여함
- 동일 교과목이라도 다른 학과나 이수구분, 영역, 학점이 다르면 다른 학수번호를 부여함

15. 교직과목 교육과정표(기독교, 영어, 역사, 유아교육과는 전과목을 이수해야 함)

1) 2010년 교직과목 교육과정표 (기독교 · 영어 · 역사 · 유아교육과는 전과목을 이수해야 함)

교 직 과 목		
교육학개론 (2)	교육심리학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사회학 (2)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2)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2)	교육실습 I (1), II (1)	교육실습 (2) * 유아교육과
교육봉사활동(2)	특수교육학개론(2)	교직실무(2)

구분	학년, 학기	교 과 목 명	시간	학점	비고
교 직	1-1	교육학개론	2	2	
	1-2	교육심리학	2	2	
	2-1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2	
	2-2	교육사회학	2	2	
	3-1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2	2	
	3-2	교육실습 I	2	1	유아교육과 4-1개설 (2시간 2학점)* I, II 구분없음
	4-1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2	
		교육실습 II	-	1	현장실습
	4-2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2	2	
	4-1	교육실습		2	
	개설예정	교육봉사활동		2	2011학년도 개설예정/2009학년부터 해당
	3-1	특수교육학개론		2	교육대학원 2009, 2010학년을 위해 개설/ 학부 사범계열 2010학번까지는 신청할 수 없음
	개설예정	교직실무		2	2011학년도 개설예정/2009학년부터 해당
계(10과목)				22	

* 학사내규 제27조(교직과목) : 사범계열은 교육실습 및 각과 지도법을 포함하여 지정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2008학번까지 교직필수과목이었던 교과교육론과 교과교재연구 지도법은 2009학번부터 전공(★학과기본과목 및 교직기본이수과목들로서 반드시 이수해야 함)으로 구분된다. 2009학번 이전 학생들은 전공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교육론과 교과교재연구 지도법을 수강하면 교직으로 이수된다.

* 붉은 글씨는 개설예정 과목임 *특수교육학개론은 사범계열 2010학번까지는 수강 불가함.

16. 2010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변경사항

1) 교양과정 변경사항

구분	과목명(시간/학점)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교필	실용영어Ⅱ(2/1)		과목 폐지	대체과목 선정 교양필수과목
교필	English listening and speakingⅡ(2/1)		과목 신설	
교필	실용영어Ⅳ(2/1)		과목 폐지	대체과목 선정 교양필수과목
교필	English reading and writingⅡ(2/1)		과목 신설	
교필	칼빈주의와 문화(2/2)	4강좌(신학-사복) 2학년2학기 1강좌(교음과) 3학년2학기	학과구분 폐지 6강좌	
교필	철학의 이해(2/2)	2강좌(신학-사복) 1학년2학기 1강좌(교음과) 2학년2학기	학과구분 폐지 3강좌	
교선	기독교고전문학의 산책(2/2)		과목 신설	
교필	구약개요Ⅱ(2/2)	5강좌	6강좌	
교직	교육심리학(2/2)	3강좌	4강좌	
교직	교육사회학(2/2)	3강좌	4강좌	
교직	교육행정및 학교경영(2/2)	3강좌	4강좌	
교선	이슬람과 기독교(3/3)		과목 폐지	
교선	중급중국어 회화(2/2)	2강좌	1강좌	

2) 학과별 변경사항

학과	학년/ 학기	과목명(시간/학점)	변동전	변동후	비고
신학	3.4/2	기도론(2/2)		과목 폐지	실천 영역
	3.4/2	목회와기도론(2/2)		과목 신설	실천 영역
영교	4/2	영문학특강(3/3)		과목 폐지	어문학 영역
	2/2	글로벌영어교육실습(2/1)		과목 신설	영어기능 영역
	4/2	English Speaking II (2/2)		과목 폐지	영어기능 영역
	4/2	English Speaking II (3/3)		과목 신설	영어기능 영역
	1/2	English Writing(3/3)	1학년 2학기, 1개반	2학년 1학기, 2개반	영어기능 영역
	3/2	영어교과교육론(2/2)		과목 폐지	대체과목 선정 학과기본이수 과목
	3/2	영어교과교육론(3/3)		과목 신설, 2개반	
	3/2	영문법교육론(3/3)		과목 폐지	교과교육 영역
	3/2	영문법교육론(3/3)		과목 신설	어문학 영역
역교	1/2	서양고중세사(3/3)		과목 폐지	서양사 영역
	2/2	역사교육과멀티미디어(3/3)		과목 폐지	교과교육학 II 영역
	1/2	한국고대사(3/3)		과목 신설	한국사 영역
	1/2	서양고대사(3/3)		과목 신설	서양사 영역
	2/2	영상매체와 역사교육(3/3)		과목 신설	교과교육학 II 영역
	1,2,3,4/1,2	역사교육과의 변경사항은 2009학번 이후 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졸업과 관련하여 대체과목이 필요한 경우 동일 영역내에서만 하기로 하고, 영역범위가 넘어가는 경우는 검토하여 하기로 하다.			
유교	2/2	아동복지(3/3)		과목 폐지	아동학과와 흠작수년교대로 타학과 인정과목으로 교과목 명칭일치를 위한 대체과목 요청
	2/2	아동복지론(3/3)		과목 신설	
교음	2/2	실내악 II (3/1)		과목 폐지	음악실기 영역
	2/2	실내악 II (3/2)		과목 신설	음악실기 영역
	3/2	실내악 IV (3/1)		과목 폐지	음악실기 영역

17. 공통개설과목 안내

공통개설학과	공통개설과목(시간/학점)	주관학과
역사교육과, 공통사회과 (공통사회 복수전공이 가능한 2003이전 학번까지 한함)	<u>역사학개론(3/3)</u> , <u>한국사개설(3/3)</u> , <u>동양사개설(3/3)</u> , <u>서양사개설(3/3)</u> , <u>한국사학사(3/3)</u> , <u>서양사학사(3/3)</u> , <u>동서문화교류사(3/3)</u> , <u>르네상스와 종교개혁(3/3)</u> , <u>기독교사관과 역사이해(3/3)</u>	역사교육과

* 밑줄친 과목은 1학기 과목임.

* 학과 이수 과목인<기독교와역사이해>과목은 역사교육.공통사회 전공중 어느 한 학점으로든 과목을 이수하면, 학과 기본과목으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단 공통사회에서 이수한 경우 역사교육전공 학점에 합산하지 않는다.

18. 타학과 인정 교과목 안내

개설학과	과목명	시간/학점	인정학과	인정영역
신학과	교회란 무엇인가	3/3	기독교교육과	교회교육
기독교교육과	기독교교육철학	3/3	아동학과	기독교아동교육
유아교육과	부모교육	3/3	아동학과	가족및지역사회협력
	Introduction CCE(짹수년)	3/3	아동학과	기독교아동교육
	아동복지론(홀수년)	3/3	아동학과	기독교아동교육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분야	
아동학과	보육학개론	3/3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분야
	Introduction CCE(홀수년)	3/3	유아교육과	기독교유아교육및복지
	아동발달	3/3	유아교육과	유아발달심리및교육철학
	아동복지론(짹수년)	3/3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분야
			유아교육과	기독교유아교육및복지
	청소년지도방법론	3/3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분야
청소년심리및상담	3/3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학과	가족복지론	3/3	아동학과	기독교아동교육
	사회문제론	3/3	유아교육과	유아발달심리및교육철학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3	유아교육과	유아발달심리및교육철학
			아동학과	아동보육과정
	청소년복지론	3/3	아동학과	기독교아동교육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3/3	아동학과	아동발달및상담
	청소년활동	3/3	아동학과	아동발달및상담
	청소년문제와보호	3/3	아동학과	기독교아동교육
청소년육성제도론	3/3	아동학과	가족및지역사회협력	

19.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연계 교과목 안내

인 정 학 과	과 목 명	시간/학점	영 역 명
기독교교육과	기독교교육과 인간학	3/3	철학
	인간발달과 성경적 상담	3/3	상담
	기독교교육과정 이론연구	3/3	교육과정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정연구	3/3	유아교육과정 및 방법론
	놀이이론세미나	3/3	유아교육과정 및 방법론
	교회학교 영유아교육프로그램	3/3	기독교유아교육 및 복지
교회음악과	교회음악양식사	3/3	교회음악이론
	바로크음악	3/3	음악이론

20. 신학과 교육과정 개정 안내

1) 영역별 교과개설표

영역별		신약	구약	교리	현대신학	교회사	실천	철학	언어
1	1학기								
	2학기			하나님과인간이해(3)					
2	1학기			그리스도와성령의사역(3)	현대신학개요(3)			고중세 철학(3)	헬라어1(3) 라틴어문법(3)
	2학기			하나님과인간이해(3) 개혁신학 입문(2)				근대철학(3)	헬라어2(3) 라틴어강독(3)
3, 4	1학기	신약의기도와영성(3) 신약영문강독(3) 누가복음(3) 성경바르게읽기(3)	언약과그리스도(3) 시편(2) 요나서(2)-홀 아모스(2)-짜	교회란무엇인가(3)	기독교변증(3) 현대종말사상(3)	초대교회사(3) 청교도사상(3) 기독교강요연구(3)-홀 중세교회사(3)	성경과 상담(3) 교회와 제자훈련(3) 성경과 리더십(3)	기독교철학사(3) 철학원강1(3)-홀 기독교와 문화(3)-짜	히브리어1(3) 중급헬라어(2)-매 중급히브리어(2)-매
	2학기	요한복음연구(3) Pauline Letters(3) Matthew's Gospel(3) 사도행전(3)	구약성경신학(3) 구약윤리(3) 창세기(3) 출애굽기(2)-짜		복음과 적용(3) 현대신학세미나(3) 종교다원주의(3)	한국종교와기독교(3) 종교개혁사(3) 장로교회사(2)-홀 근세교회사(3)	청소년상담(3) 미션퍼펙티브(3) 목회와기도(2)	철학원강2(3)-홀 문화연구(3)-짜	히브리어2(3) 중급헬라어(2)-매 중급히브리어(2)-매
개설학점수 / 156		24	20	11	18	23	17	21	22
졸업소요학점	단수 / 50	7	7	5	3	5	4	10	9
	다전공1/ 42	5	5	4	3	4	3	9	9
	다전공2/ 36	5	5	3	2	4	2	6	9

* (짜) 짝수년에 개설되는 과목을 표시함. (홀) 홀수년에 개설되는 과목을 표시함. (매) 매학기 개설되는 과목을 표시함 * 영문표기 과목은 영어강의임.

* 부전공은 각 8개 영역별로 한 과목 이상씩 총21학점을 취득하면 됨.

21. 기독교교육과 교육과정 개정안내

1) 영역별 교과개설표

영역		철학	과정 방법론	상담	교회교육	
1학년	1학기				<u>기독교교육학개론(3)</u> ※	
	2학기			기독교교육사(2)	어린이교육(2)	
2학년	1학기	<u>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3)</u>	기독교교육 영문강독(2)	기독교교육과 인간발달(3)	교육신학(3) 기독교교육 논리와 논술(2)※	
	2학기	기독교교육과 정신사상(3) 기독교교과교육론(2)※	<u>기독교교육과정(3)</u>		<u>교회교육사(3)</u>	
3학년	1학기	<u>기독교교육철학(3)</u>	청소년 교육(3)	<u>기독교상담심리(3)</u>	교회란무엇인가(3) (신학과 개설 과목)	
	2학기	<u>기독교 교육과 인간학(3)</u>	<u>기독교 교육방법론(3)</u> 교육과 컴퓨터(2) 기독교 교과교재연구지도법(2)※	기독교교육상담(3)	교육목회(3) 성경교수법(3)	
4학년	1학기	기독교 교육 세미나(3) 현대기독교교육사상연구(2)	기독교교육행정(3) 전자교육과정개발(3)	상담의 실제(3)	장년교육(3) 교육지도자론(3)	
	2학기	기독교교육과 사회(2)	교회와 여성(3)(격) 정보화사회와 기독교교육(3)(격)	기독교교육과 가정사역(3)	<u>교회교육의 이론과 실제(3)</u>	
개설학점수		90	21	24 (격년제+3)	17	28
졸업 소요 학점	단수	58	14	14	16	14
	다전공	51	12	12	12	15

* 교원자격증(표시과목:종교) 취득을 위해 2009학년부터는 각 영역의 ※표된 4과목(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을 필히 이수해야 함.

또한 각 영역별로 밀줄친 과목(교직기본이수과목)을 각각 1과목 이상씩 총21학점 (7과목)이상 이수하여야 함.(미이수시 교원자격증 미취득 및 졸업불가함)

* 위의 굵은글씨 과목은 타학과인정 과목임. * (격)은 격년제 과목임.

* 2008학년까지의 교직과목은 다음으로 대체됨 : 기독교교과교육론(2), 기독교교과교재연구지도법(2)

* 2009학년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졸업시까지 총평균평점 2.32점(4.50 만점기준-즉, 100점만점 기준으로 총평균점수 75점) 이상을 받아야 함.

22. 영어교육과 교육과정 개정안내

1) 영역별 교과개설표

영역		영어기능	교과교육	어문학	
1학년	1학기	English Speaking I (3) English Listening(3) 영어독해(3)	영어교육학개론(3)※		
	2학기			영어학개론(3) 영어어휘(3)	
2학년	1학기	English Writing(3) Field Experiences in Teaching English(1)	유비쿼터스영어교육(3)	영어발달사(3) 영어습득론(3)	
	2학기	글로벌영어교육실습(1)	Teaching Listening and Speaking in English(3) 영어교육론(3) 멀티미디어 영어교육(3)	영어음성학의 이론과 실제(3) 영미문학개관(3)	
3학년	1학기	Classroom English(3)	영어독해 및 작문교육론(3) 영어교수법(3)	영어통사론(3)	
	2학기		영어교육과정 및 평가(3) ELT & English Essay(3)※ 영어교과교육론(3)※	영문법교육론(3)	
4학년	1학기		영미문화이해 및 지도(3) 영어교과교재연구지도법(3)※	영미문학교육론(3)	
	2학기	English Speaking II (3) Christianity & ELT (3) TESOL특강(3)			
개설학점수		89	26	36	27
졸업 소요 학점	단 수	50	13	22	15
	다전공	50	13	22	15

- * 2009학번 이후부터는 교과교육 필수과목 이외에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기본 이수과목(밑줄 표시)중 각 영역별 1과목이상씩 총7과목(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기본이수과목(밑줄 표시) - 영어교육론(또는 멀티미디어영어교육), 영어학개론, 영미문학개관, 영문법교육론, English Writing, 영어독해(또는영어독해 및 작문교육론), English Speaking (I, II, 또는 Teaching Listening & Speaking in English), 영어음성학의 이론과 실제, 영미문화이해 및 지도
- * ※표시된 과목은 학과 기본이수과목(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이므로 필히 이수해야 함.
- * 영문표기 과목은 영어강의임.
- * 2009학번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졸업시까지 총평균평점 2.32점(4.50 만점기준-즉, 100점만점 기준으로 총평균점수 75점) 이상을 받아야 함.

23. 역사교육과 교육과정 개정 안내

1) 영역별 교과개설표

역사교육과 교육과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며, 2009학번 이후의 학생은 본 개정 교육과정으로 적용되므로 반드시 숙지하여 수강신청 및 학점관리에 착오 없기 바람.

영역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I	II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1학년	1학기	②역사학개론(3)		한국사개설(3)	동양사개설(3)	서양사개설(3)	
	2학기	역사교육과정 및 평가(3)		④한국고대사(3)		⑤서양고대사(3)	
2학년	1학기	※①역사교과교육론(2)		④한국중세사(3)	⑤동아시아고대사(3)	⑤서양중세사(3)	
	2학기	영상매체와 역사교육(3) 한일관계사와 역사교육(3) ②교육자료강독 I (한문)(3)					
3학년	1학기			④한국근대사(3) ⑥현대세계와 한국(3)	⑤동아시아중세사(3)	⑤서양근대사(3)	
	2학기	※역사교과교재연구지도법(2)		③한국사학사(3)		③서양사학사(3) 서양사회경제사(3)	
4학년	1학기	※역사논술(2)			⑤동아시아근대사(3)	※기독교 사관과 역사이해(3) 르네상스와 종교개혁(3)	
	2학기				③동서문화교류사(3)	유럽지성사(3) ⑥20세기 현대사(3)	
개설학점수	90	12	15	18	15	30	
	단수	51	8	8	7	10	18
졸업소요학점	다전공	51	8	8	7	10	18

* ※ 표는 학과 기본이수과목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교과교육학 I 영역에서 역사교과교육론(2), 역사논술(2), 역사교과교재연구지도법(2) 과목은 전공 필수 과목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교과교육학 I 영역의 역사교과교육론(2), 역사논술(2) 역사교과교재연구지도법(2) 과목의 6학점을 제외하고, 교과교육학 I 영역에서 2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함. - 즉,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중 위의 지정된 3과목을 포함하여 총 8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교원자격증(표시과목:역사) 취득을 위해서는 위의 밑줄친 ①,②,③,④,⑤,⑥의 6가지 기본이수분야에서 각 1과목 이상, 총 21학점(7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2009학번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졸업시까지 총평균평점 2.32점(4.50 만점기준-즉, 100점만점 기준으로 총평균점수 75점) 이상을 받아야 함.

24. 유아교육과 교육과정 안내

1) 영역별 교과개설표

영역		유아발달심리 및 교육철학	유아교육과정 및 방법론	기독교 유아교육 및 복지
1학년	1학기	•유아교육론(3) 원서강독(3)		
	2학기	•아동발달(3)(아동학과 개설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3)(사회복지학과 개설과목)	기약1(1)	•아동건강교육(3)
2학년	1학기	유아교육사조(3) 인지발달(3) 사회문제론(3)(사회복지학과 개설과목)	기약2(1) •아동수과학지도(3) 유아언어교육(3)	
	2학기		•유아교육과정(3) •아동음악과 동작(3) 유아미술교육(3)	•아동복지론(3)(짝수년 아동학과 개설과목)
3학년	1학기	교사론(3)	교구활용법(3) 유아사회교육(3) 유아컴퓨터교육(3) ★유아 교과교육론(2)	
	2학기	★유아논리 및 논술(2)	•아동생활지도(3) •아동문학(3) 유아놀이지도(3)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1) ★유아교과교재연구지도법(2)	유아교육과 신학(3) 장애아통합교육(3)
4학년	1학기		유아교육연구법(3)	•특수아동지도(3) Introduction to CCE(3)(짝수년개설)
	2학기	•부모교육(3) 유아교육세미나(3) ★유아교육과교수및평가법(2)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3)	기독교아동교육과정(3) 장애영유아 교수방법론(3)
개설학점수	95	25	46	24
졸업소요학점	단수	50	15	14
	다전공	50	15	14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2009학년도 입학생(동일학년에 해당하는 편입생 포함)부터 **밀줄 친 과목** 중 총 7과목(21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표 한 과목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임. * 위의 굵은 글씨 과목은 타학과 인정 과목임.

* 2009학년도 입학생(동일학년에 해당하는 편입생 포함)부터는 신설되는 전공의 교과교육 영역(★표 한 과목 - 4과목 8학점)과 개설예정인 교직과목(유아관찰및실습, 특수아동학개론, 교직실무 - 3과목 6학점) 전부를 이수하여야 함.

2) 영유아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1항 관련)

영역	개설교과목			이수과목(학점)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보육기초	유아교육론(3) 유아교육과정(3) 아동복지론(3)	아동발달(3)		4과목(12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2) 아동생활지도(3) 특수아동지도(3)	아동상담(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3)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아동문학(3) 아동음악과 동작(3) 아동수·과학지도(3)	놀이지도(3) 언어지도(3) 아동미술(3) 영유아교수방법(3)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3)	아동간호학(3) 정신건강론(3)		2과목(6학점)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3)	가족복지론(3) 가족관계(3) 보육정책론(3) 보육시설운영과관리(3)	지역사회복지론(3) 자원봉사론(3)	1과목(3학점)이상 선택
필수과목	교육실습(2)			1과목(2학점) 필수
전체	12과목 35학점 이상			

※ 아동학과 및 사회복지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을 이수해도 무관함. ※ 자세한 사항은 보육자격관리사무국 (<http://www.ctcm.or.kr>) 참고.

3) 특수보육교사 자격 인정을 위한 교과목

기본 교과목	유사교과목명	
교육학개론	-	기본 교과목 8과목(16학점)이상 이수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동지도(3)	
(특수아)통합교육	장애아통합교육(3)	
영유아교수 방법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3), 영유아교수방법(3)(아동학과개설)	
특수아(장애아) 부모교육론	부모교육(3)	
정서장애아교육	정신건강론(3)(아동학과개설)	
언어발달장애	유아언어교육(3), 언어지도(3)(아동학과개설)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가족치료(3)(아동학과개설), 가족복지론(3)(사회복지과개설)	
장애아동보육론	유아교육론(3), 보육학개론(3)(아동학과개설)	
보육실습	교육실습(2)	
아동발달론	인지발달(3), 유아사회교육(3), 아동발달(3)(아동학과개설)	

※ 기본 교과목 외에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반드시 유사교과목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 한시적인 자격인정제도이므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해당 보육기관 취업 시, 구청 등 해당관청에 보육특수교사 자격을 인정받기위한 서류로 유사교과목확인서-특수교사 자격인정 관련-을 제출)

※ 아동학과 및 사회복지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을 이수해도 무관함.

2) 교회음악과 교육과정

필수/선택	전공영역	개 설 과 목	개설 과목	개설 학점수	졸업소요학 점
전공필수	교회음악이론	교회음악입문(2)	1	2	38
	교회음악실기	전공실기 I-VIII(16), 시창청음 I·II(2), 연주 I-VI(6P) 합창 I-II(성,피,오,작,지) · 합주VII-VIII(관,현)(2) 합창III-VI(성,피,오,작,지) · 합주III-VI(관,현)(8)	22	28	
	음악이론	서양음악사 I, II, III(6), 기초화성학(2)-*단, 작곡 전공 2006~2008학번까지는 고급화성학 I(2)을 전공필수로, 작곡 전공 2009학년부터는 고급화성학 II(2)을 전공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4	8	
소 계	* 합창,합주는 ()안의 표시된 전공과 수강자의 전공이 일치하여야 함		27	38	38
전공선택	교회음악이론	예배와음악(2) 찬송가학(2) 교회음악행정(2) 교회음악문헌(2) 성가분석(2)	5	10	4
	교회음악실기	실기반주 I-IV(4P)[피,오] 칸타타·오라토리오 워샬 I·II(4)[성] 작곡세미나 I, II(4)[작], 지휘세미나 I·II(4)[지] 교회음악실습(2) 총신과이어 I-VI(6) 채플찬양 I-IV(4) 찬송가변주법 I·II(4) 예배를 위한 실기클래스 I·II(piano, voice, organ)(6) 기초지휘법(2), 합창지휘법(2), 피아노 반주법 I·II(4) 오르간반주법 I·II(4) 어린이및청소년찬양지도법 (2) 교회음악워크샵(1)	37	49	4
	음악이론	성악문헌(2)[성], 피아노문헌(2)[피], 오르간문헌(2)[오], 현대음악이론및실습(2)[작], 합창문헌(2)[지] 고급화성학 I·II(4), 대위법(2), 고급대위법(2), 현대음악의이해(2), 음악분석(2), 합창편곡법(2), 피아노교수법(2), 기초음악이론(1)	14	27	4
	음악실기	이태리딕션(2)[성], 독일어딕션(2)[성] 기악합주 V-VIII(4)[관, 현] 기악합주 I-IV(4), 합주 I·II(2), 오페라워크샵(2) 시창청음III·IV(2), 관현악법 I·II(4) 건반화성학(1), 독보법 I·II(2), 관현악지휘법(2), 컴퓨터음악(2), 컴퓨터음악실습(2) 영어딕션(2), 불어딕션(2), 실내악 I, II(4)	27	39	4
소 계	[]안의 표시된 전공은 학년별 전공기초과목임.		83	125	16
합 계			110	163	54

26. 아동학과 교육과정 개정 안내

1) 영역별 교과개설표

영역		아동보육과정	아동발달 및 상담	기독교 아동 교육	가족및지역사회협력	
1학년	1학기	보육학개론(3) 아동음악반주 I (1)		기독교아동교육매체개발(3) 건강가정론(3)(짜)	가정생활교육(3)	
	2학기	놀이지도(3) 아동음악반주II(1) <u>인간행동과사회환경(3)</u> (사회복지학과 개설과목)	※아동발달(3)	※아동복지론(3) ((짜)아동학과 개설과목)		
2학년	1학기		아동간호학(3) 청소년심리및상담(3)	※Introduction to Christian Child Education(ICCE)(3) ((짜)유 아교육과개설과목) 청소년복지론(3) (사회복지학과 개설과목)	**가족과문화(3)	
	2학기	보육과정(3)	아동미술(3) 이상발달(3) 아동가족조사 법(3) 청소년활동(3) (사회복지학과 개설 과목)(짜)	가족복지론(3) (사회복지학과 개설 과목)	청소년문화(3) (사회복지학과 개설 과목)(홀)	
3학년	1학기	영유아교수방법(3) 언어지도(3) 방과 후아동지도론(3)(홀)	**청소년지도방법론(3)	기독교교육철학(3) (기독교교육학 과 개설과목)	보육정책론(3)	
	2학기		아동상담(3) 아동관찰및행동연구(3)		가족관계(3) 청소년육성제도론(3) (사회복지학과 개설과목)	
4학년	1학기	보육실습(3)	가족치료(3)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3) (사회복지학과 개설과목)	청소년문제와보호(3) (사회복지학 과 개설과목)	보육시설운영과관리(3)	
	2학기		정신건강론(3)		건강가정현장실습(3) ※부모교육(3) (유아교육학과개설과 목)	
개설학점수	86		23(20)	33	12(9)	18
졸업소요 학점	단 수	45	12	18	6	9
	다전공	42	9	18	6	9

♣ 부전공(총21학점) : 필수과목 4과목(12학점)+전선 9학점

☞ 필수(4과목) : 아동복지론(3), 보육학개론(3), 아동발달(3), 보육과정(3)

* 위의 밑줄 굵은글씨 과목은 타학과인정 과목임.

* 영문표기 과목은 영어강의임. * Intro. CCE는 아동학과와 유아교육과가 격년제로 개설 (홀수년: 아동학과, 짝수년: 유아교육과)

* 아동복지론은 아동학과와 유아교육과가 격년제로 개설(짝수년: 아동학과, 홀수년: 유아교육과)

* 위의(※)로 표기된 과목(아동발달,부모교육)은 **공동개설과목**이었으나 타학과 인정과목으로 변경됨.

* 다음 두 과목은 격년제로 개설됨 : 건강가정론(짝수년), 방과후 아동지도론(홀수년)

* 다음 두 과목(**청소년지도방법론, **가족과문화)은 전공기초과목과 연계된 교양과목으로 개설함.

2)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점수)
보육기초	아동복지론(3), 보육학개론(3), 아동발달(3), 보육과정(3), 보육실습	5과목(15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3), 아동상담(3)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3), 언어지도(3), 아동미술(3), 영유아교수방법(3)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간호학(3), 정신건강론(3)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3), 가족복지(3), 가족관계(3), 보육정책(3), 보육시설운영과 관리(3)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전체	12과목(35학점) 이상	

- *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실습기관에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됨)
-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는 사전실습임.
- * 위의 과목은 2005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5학년부터 적용 됨.
- * 자격증 관련 업무는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http://www.ctcm.or.kr>)에서 담당.

3) 건강가정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구분	교과목	졸업	
전공과목	건강가정론(3), 가족치료(3), 가정생활교육(3), 가족과 문화(3), 건강가정현장실습(3), 가족복지론(3) (사회복지학과 개설과목)	5과목 이상	
관련과목	기초이론	가족관계(3), 보육학개론(3), 아동복지론(3), 정신건강론(3), 사회복지개론(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3) (사회복지학과 개설과목)	4과목 이상
	상담교육등 실제	아동상담(3), 부모교육(3), 소비자교육(3), 사회복지실천기술론(3), 지역사회복지론(3) (사회복지학과 개설과목)	3과목 이상

- * 건강가정사(<http://www.familynet.or.kr>) 교과목 중 총 12과목(전공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 건강가정현장실습은 건강가정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가능한 실습을 해야 한다.

4) 가정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영역	과 목 명
복지기초 (3과목)	아동발달(3), 가족관계(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3)
복지심화 (2과목)	아동복지론(3), 보육학개론(3), 보육과정(3), 놀이지도(3) → 3과목 중 한 과목만 인정(택1)
복지응용 (2과목)	가족치료(3), 소비자교육(3), 부모교육(3), 아동상담(3), 아동관찰및 행동연구(3) → 3과목 중 한 과목만 인정(택1)
방법론 (1과목)	아동가족조사법(3), 컴퓨터관련과목(3), 기타 조사연구방법론 관련(3)
실습 (1과목)	보육실습(3)

* 가정복지사는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 (사)대한가정학회(<http://www.khea.or.kr>)에서 인정하는 학회자격증임.

5) 방과후 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영역	과 목 명	과목수
기초(필수)	방과후아동지도론(3), 아동발달(3), 아동상담(3), 아동복지론(3), *방과후 실습	5
아동발달 이해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3), 정신건강론(3), <u>교육심리학(2) (교양교직 개설과목)</u> , <u>인간행동과 사회환경(3)(사회복지학과 개설과목)</u>	2
교수학습 방법론	보육학개론(3), 영유아교수방법론(3), 보육과정(3), 미술지도(3), 언어지도(3), <u>교육학개론(2) (교양교직 개설과목)</u>	2
부모/지역 사회연계	부모교육(3), <u>지역사회복지론(3), 사회복지개론(3), 가족복지론(3), 자원봉사론(3) (사회복지학과 개설과목)</u>	1
운영관리	보육정책론(3), 보육시설운영관리(3), <u>학교사회복지론(3), 사회복지행정론(3) (사회복지학과 개설과목)</u>	1

* 방과후 실습은 국가 공인기관(초등학교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방과후, 청소년 수련시설)과 기타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방과후기관으로 15인 이상의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에 한하며, 실습기간은 60시간 이상이다. 실습은 자격시험 통과 전 또는 통과 후 2년 안에 이수하여야 한다. (실습은 기관에서 약 2주간 하루 6시간 이상 실습하여 실습확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됨)

* 방과후교사는 국가자격증이 아니라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http://www.afterschool.or.kr>)에서 인정하는 학회자격증임.

6) 아동상담사 2급 자격시험 응시과목

필수과목	아동발달, 아동행동문제, 아동상담
선택과목 (택 2)	심리측정 및 평가, 부모교육, 놀이치료

- * 위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 아동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 응시 과목임.
- * 위 자격증은 한국아동학회(<http://www.childkorea.or.kr>)에서 주관함.

7)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교과목 (2급)

구분	검정과목	검정방법	
2급	청소년지도방법론(3), 청소년심리 및 상담(3) 청소년육성제도론(3), 청소년 복지(3),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3), 청소년문제와 보호(3) 청소년문화(3), 청소년 활동(3) (사회복지학과 개설과 목)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 * 밑줄은 사회복지학과 개설과목임.
- * 자격증 업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http://www.youthnet.re.kr/worker_new/summary.asp)에서 담당

◇ 취업을 위한 자격증 ◇

자격증	주관처
보육교사	여성부
건강가정사	보건복지가족부
가정복지사	대한가정학회
아동상담사 시험응시자격	한국아동학회
방과후 교사	한국 방과후 아동지도학회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위원회

27. 사회복지학과 교육과정 개정안내

▶ 아래의 교육과정(졸업소요학점 변경 포함)은 2008학년도 입학생(동일학번에 해당되는 편입생 포함)부터 적용됨

1) 영역별 교육과정 개설표

영역		사회복지 기초	실천방법론 및 조사분석	제도, 행정 및 프로그램	사회복지분야	
1학년	1학기	사회복지개론(3)<부전공>			보육학개론(3)(아동학과 개설과목)	
	2학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3)<부전공> 사회봉사현장연구(3)			아동복지론(3)(아동학과/유아교육학과 교차 개설과목)	
2학년	1학기		사회복지실천론(3)<부전공> 사회복지조사론(3)		사회문제론(3) ♣청소년복지론(3) ♣청소년 심리 및 상담(3)(아동학과 개설과목)	
	2학기		사회복지실천기술론(3)	사회복지법제(3)	가족복지론(3) 노인복지론(3) ♣청소년활동(3)(짝) / 청소년문화(3)(홀)	
3학년	1학기	※ 기독교사회복지론(3)<부전공>	지역사회복지론(3)	사회복지행정론(3)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3)	정신보건사회복지론(3) ♣청소년문제와보호(3) ♣청소년지도방법론(3)(아동학과 개설과목)	
	2학기		사회복지자료분석론(3) 사회복지현장실습 I A / B(3)	사회복지정책론(3)	장애인복지론(3) 학교사회사업론(3)	
4학년	1학기	사회복지발달사(3)			자원봉사론(3) 의료사회사업론(3)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3)	
	2학기			♣청소년육성제도론(3)	※장애인선교의이론과실제(3) 사회복지현장실습 II(3)	
개설 학점수	90	15	18	15	42	
졸업 소요 학점	단수	43	9	15	9	10
	다전공	42	6	15	9	12

- 별도표시(※)된“기독교사회복지론(3)”은 학과기본과목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밑줄 친 과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필요한 필수(10과목) 전공기본과목임(단, 졸업여부와는 직접적 관련 없음)
- 위의 굵은글씨 과목은 타학과 인정과목임.

- 사회복지학과 부전공(총21학점) : 필수과목 12학점(4과목)+전선 9학점 이상 이수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3), 사회복지실천론(3), 기독교사회복지론(3)
- 사회복지학과 다전공(총42학점) : 다전공 신청 전에 반드시 '사회복지개론'을 이수해야 하며, 사회복지실습을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함께 3학년 2학기에 실시하도록 한다.
- 사회복지현장실습I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을 필히 이수해야 함. 프로그램개발과 평가는 이수할 것을 권장함.
- 사회복지현장실습II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I을 필히 이수해야 함.
- 별도표시(♣)된 8과목은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필수 검정과목이며, 이 중 청소년문화(3)와 청소년활동(3)은 격년제로 개설됨.

▣ 사회복지학과 졸업 시 취득 가능한 자격증 안내

1. 사회복지사 자격증

1) 1급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2급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총 14과목 이상)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필수과목(10)	선택과목(4)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u>아동복지론</u> , <u>청소년복지론</u> , <u>노인복지론</u> , <u>장애인복지론</u> , <u>여성복지론</u> , <u>가족복지론</u> , <u>산업복지론</u> , <u>의료사회사업론</u> , <u>학교사회사업론</u> , <u>정신건강론</u> , <u>교정복지론</u> , <u>사회보장론</u> , <u>사회문제론</u> , <u>자원봉사론</u> , <u>정신보건사회복지론</u> , <u>사회복지지도감독론</u> , <u>사회복지자료분석론</u> , <u>프로그램개발과 평가</u> , <u>사회복지발달사</u> , <u>사회복지윤리와 철학</u> 중 4과목이상 * 밑줄친 과목은 교내 개설과목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3학년 이상으로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을 이수한 자만이 수강가능함.

2. 건강가정사 자격증

건강가정사(<http://www.familynet.or.kr>) 교과목 중 총 12과목(전공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구 분		개설과목	이 수
전공과목		건강가정론(3), 가족치료(3), 가정생활교육(3), 건강가정현장실습(3), 가족과 문화(3), 가족복지론(3)	5과목이상
관련과목	기초이론	가족관계(3), 보육학개론(3), 아동(청소년)복지론(3), 정신건강론(3), 사회복지개론(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3), 장애인복지론(3), 노인 복지론(3)	4과목이상
	상담·교육 등 실제	아동상담(3), 부모교육(3), 소비자교육(3),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3), 사회복지실천론(3), 사회복지실천기술론(3), 지역사회복지론(3)	3과목이상

3.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전공으로 이수한 자

구분	개설과목	검정방법	
2급(8과목)	청소년지도방법론(3), 청소년심리 및 상담(3) 청소년육성제도론(3), 청소년 복지(3),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3), 청소년문제와 보호(3) 청소년문화(3), 청소년 활동(3)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3급 청소년 지도사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4. 보육교사 자격증

영역	개설과목	이수과목(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3) 보육학개론(3) 아동발달(3) 보육과정(3), 보육실습(3)	5과목(15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3), 아동상담(3)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3), 언어지도(3), 아동미술(3), 영유아교수방법(3)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간호학(3), 정신건강론(3)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3), 가족복지(3), 가족관계(3), 보육정책(3), 보육시설운영과 관리(3)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전체	12과목 (35학점) 이상	

※ 보육교사자격(<http://www.ctcm.or.kr>)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육학개론, 아동발달, 보육과정, 보육실습, 아동복지론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실습기관에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함(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는 사전실습임.

※ 위의 과목은 2005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5학년부터 적용 됨.

5.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 1급

- ①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 ②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2) 2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6. 학교사회복지사

구분	응시자격
필수 자격 요건	1.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3. 대학(원)에서 학교사회복지론을 이수한 자 4. 대학(원)에서 아동복지론과 교육학 관련 교과목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선택 자격 요건	1.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의 기간 동안 240 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을 이수한 자 혹은 2. 초·중·고등학교(이후 학교로 표기)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로 6개월 이상 근무 한 자 혹은 3.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를 1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자

※ 필수자격 요건은 4가지 사항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선택자격 요건은 3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함.

7. 사회조사분석사

다양한 사회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담당하는 새로운 직종으로 기업, 정당,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 각종 단체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

종목 및 등급	검정 기준
사회조사분석사 1급	1) 종합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조사목적에 적합한 조사방법, 통계기법을 선택·결정·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조사보고서 작성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사회조사분석사 2급	1) 질문지(조사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조사방법에 관한 기본지식의 유무

- | | |
|--|---|
| | -회수된 조사표를 검토·분석하기 위한 자료 준비(편집·부호화·자료정선 등)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1)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100문항 (150분)
- 실기 : 복합형 (4시간)

2)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60점 이상

28. 다전공, 부전공 이수 안내

구 분	다전공	부 전 공
전공이수학점	<p>■ 2007학번이전 : 신학-36학점 ★교회음악은 다전공불가 : 교육계열/아동학/사회복지학-42학점</p> <p>■ 2008학번이후 : 신학과-36학점 ★교회음악은 다전공불가 : 기독교교육/영어교육/유아교육-42학점 (★단, 2009학번 : 기독교교육-51학점/영어교육-50학점/유아교육-50학점) : 역사교육-51학점 : 아동학/사회복지학-42학점</p> <p>※ 사회복지학 다전공 기준: ① 사회복지개론을 다전공 신청전에 이수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함께 3학년 2학기에 실시하도록 한다. ② 학과 정원의 30% 이내로 하되 지원자가 30%를 넘을 때는 성적순으로 결정한다.(선발인원:1학기-6명, 2학기-6명)</p> <p>※ 사범(교육)계열 다전공 기준: ▶ 2006학번~2007학번 : 주전공학과 입학정원의 50% 이내로 하고 지원자가 50%를 넘을 때는 성적순으로 결정한다.(총선발인원은 학년별로 50%이내씩 선정함) ▶ 2008학번이후 : 주전공학과 입학정원의 100%이내로 하고 지원자가 100%를 넘을 때는 성적순으로 결정한다.(총선발인원은 학년별로 100%이내씩 선정함)</p> <p>◦교육과정에 표기되어 있는 영역별로 요구되는 이수학점(학과기본과목을 포함)을 이수해야 함. (홈페이지->대학/대학원->대학->각 학과 교육과정 참조) ◦교육계열 : 교원자격증취득을 위한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은 9학점(99학번까지) 또는 5과목(14학점)이상(2000학번이후) 또는 7과목(21학점)이상(2009학번이후)을 포함하여 영역별로 요구되는 전공이수학점(학과기본이수과목과 이수영역과목을 포함)을 이수해야 함.</p>	<p>■ 신학, 교회음악, 아동학, 사회복지학 : 21학점이상</p> <p>■ 기독교교육, 영어교육, 역사교육 : 30학점이상(부전공 교직4학점 별도) ◦교육계열 : 교원자격증취득을 위한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은 9학점(99학번까지) 또는 5과목(14학점)이상(2000학번이후)을 포함하여 영역별로 요구되는 전공이수학점(학과 기본과목과 이수영역 과목을 포함)을 이수해야 함.</p> <p>■ 사범계 학과 부전공 기준: ▶ 2005학번이전 : 신청인원 제한없음 ▶ 2006학번~2007학번 : 주전공학과 입학정원의 50% 이내로 하고 지원자가 50%를 넘을 때는 성적순으로 결정한다.(총 선발인원은 각 학년별로 50%이내씩 선정함) ▶ 2008학번이후 : 전체 사범계열 부전공 폐지(이수불가)</p>
학점인정범위	<p>■ 동일과목을 전공과목, 다전공과목으로 중복인정은 불가 (단, 공통사회 다전공(2003학번까지 이수가능)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 가능-중복 인정된 학점수는 졸업학점(140학점)에 중복 계산되지 않음)</p>	<p>■ 동일과목을 전공과목, 부전공과목으로 중복인정은 불가</p>
사범계열 교직과목	<p>■ 2008학번까지 : 전공교직(20학점)기본이수+다전공교직(4학점)추가이수 ◦해당과목 : 교과교육론(2), 교과교재연구지도법(2) ◦학교급별과는 관계없이 다전공일 경우는 제1전공으로 교육실습을 실시하고 제2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됨.(2009.4월부터 시행됨)</p> <p>■ 2009학번이후 : 교과교육론(2), 교과교재연구지도법(2)은 전공과목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다전공시 별도 추가이수 과목은 없음(단, 기본 교직과목은 별도 이수)</p>	<p>■ 2007학번이전 : 전공교직(20학점)기본이수+부전공교직(4학점)추가이수 ◦해당과목 : 교과교육론(2), 교과교재연구지도법(2),</p> <p>■ 2008학번이후 : 전체 사범계열 부전공 폐지(이수불가)</p>
신청자격	<p>■ 2007학번이전 : 2학년부턴 신청 (35학점이상 취득평균평점 2.50이상) ■ 2008학번이후 : 2학년부턴 신청 (32학점이상 취득평균평점 2.50이상)</p>	<p>■ 2007학번이전 : 2학년부턴 신청 (35학점이상 취득평균평점 2.50이상) ■ 2008학번이후 : 2학년부턴 신청 (32학점이상 취득평균평점 2.50이상)</p>
자격제한	<p>① 교육계열 재학생 외에는 교원자격증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비교육계열학생은 교육계열을 다전공 할 수 없다. ② 비예능계 학생의 예능계 다전공은 할 수 없다.</p>	<p>① 교육계열 외의 학과에서는 교육계열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②자격종별이 다른 학과(중등2급과 유치원2급)간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 단, 2008학번이후 : 전체 사범계열 상호간 부전공 이수불가</p>

29. 영어교육과 ‘Field Experiences in Teaching English(영어교육현장실습)’ 교과목 교과운영 안내

1. 학점

- 1) ‘Field Experiences in Teaching English(영어교육현장실습, FETE로 약칭)’ 교과목을 영어교육과 영어기능영역 전공 선택(1학점)으로 개설하고 학점은 P(Pass) 또는 F(Fail)로 표기한다. 단, 이 과목은 교직과목 중 ‘교생실습’ 과목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 2) 교육시간은 기본이론교육 2-4시간, 현장실습 26-28시간 총 30시간으로 정한다.
- 3) 8학기 동안 1회 1학점만 이수할 수 있다.
- 4) 현장실습 시간은 ‘FETE’ 교과목에서만 인정받으며, 다른 과목이나 다른 용도로 중복해서 인정받을 수 없다.
(예: 어학연수, 해외문화탐당, 선교현장실습 등).

2. 수강신청

FETE(영어교육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학기 중 영어교육현장실습을 할 경우

- a.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한다.
- b. 개강 후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기본 교육 2-4시간을 받는다.
- c. 영어교육기관이나 현장학교를 먼저 정하고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과사무실에 영어교육현장실습 신청서를 제출한다.
- d. 현장실습 후에는 성적평가에 필요한 학생의 현장실습 일지와 현장실습 자기 평가서, 영어교육현장실습 기관의 평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해당학기의 기말고사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2) 방학 중에 현장실습을 할 경우

- a. 영어교육기관이나 현장실습학교를 먼저 정하고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과사무실에 영어교육현장실습 신청서를 제출한다.
- b. 현장실습 후에는 성적평가에 필요한 학생의 현장실습 일지와 현장실습 자기 평가서, 영어교육현장실습 기관의 평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방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c. 개강 후,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한다.
- d. 수강신청 후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기본교육을 2-4시간을 받는다.
- e. 방학 중의 영어교육현장실습 시간은 1년에 한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즉, 겨울방학 중의 현장실습 시간은 다음 학년도 1학기에만 인정되고, 여름방학 중의 현장실습 시간은 다음해 1학기에만 인정된다.

3. 성적평가

1) 성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a. 기본이론교육: 10%
- b. 학생의 영어교육현장실습 일지: 20%
- c. 학생의 영어교육현장실습 자기 평가서: 20%
- d. 영어교육 현장실습 기관의 평가서: 50%

* 기본이론교육은 실습전의 경우는 실습에 관한 기본교육을 말하며, 실습후의 경우는 실습결과보고 프리젠테이션을 포함한다.

2) 성적평가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F로 처리한다.

- a. 기본교육: 2-4시간 중 1시간이라도 결석할 경우
- b. 현장실습 시간: 26-28 시간 중 4시간 이상 결석한 경우
- c. 현장실습 일지/자기 평가서: 현장실습 일지와 자기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d. 영어교육현장실습 기관의 평가서: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가 F인 경우

3)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영어교육현장실습 기관의 담당자는 F로 평가한다.

- a. 무단결석 2회 이상일때
- b. 지각 4회 이상일때
- c. 성의없는(또는 불량한) 실습태도가 3회 이상 체크되었을 때
- d. 기타 사유로 도저히 성적을 줄 수 없는 학생으로 판단되었을 때

4. FETE(영어교육현장실습) 인정내용

- 1) 중등 협력학교에서 부진아 영어지도(방중) 및 기타 협력프로그램에 교사 및 보조교사로 봉사
- 2) 그 외 중등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로 자원봉사
- 3) 해외 협력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어실습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봉사
- 4) 영어주일학교나 영어캠프에서 교사 또는 보조교사로 봉사
- 5) 학과에서 실시하는 방중 영어캠프에 참여
- 6) 교회나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방과후교실(초·중등)에서 영어과목 도우미로 자원봉사
- 7) 기타 학과가 인정하는 현장실습내용
- 8) 인정내용 중 지도학생수와 관련한 내용 - 본 과목에서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사나 교사도우미로 사역하는 수강자 1인이 최소한 20명 이상의 학생을 지도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30. 교회음악과 ‘교회음악워크샵(Church Music Workshop)’ 교과목 교과운영 안내

1. 학점

- 1) ‘Church Music Workshop(교회음악워크샵, CMW로 약칭)’ 교과목을 교회음악과 교회음악실기 영역 전공 선택(1학점)으로 개설하고 학점은 P(Pass) 또는 F(Fail)로 표기 한다.
- 2) 교육시간은 기본이론교육 2-4시간, 워크샵 26-28시간 총 30시간으로 정한다.
- 3) 8학기 동안 1회 1학점만 이수할 수 있다.
워크샵 시간은 ‘CMW’ 교과목에서만 인정받으며, 다른 과목이나 다른 용도로 중복해서 인정받을 수 없다(예: 어학연수, 해외문화탐당, 선교현장실습 등).

2. 수강신청

CMW(교회음악워크샵)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학기 중 교회음악워크샵을 할 경우

- a.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한다.
- b. 개강 후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기본 교육 2-4시간을 받는다.
- c. 교회음악워크샵 기관·단체를 먼저 정하고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과사무실에 교회음악워크샵 신청서(별첨1)를 제출한다.
- d. 워크샵 후에는 성적평가에 필요한 학생의 워크샵 일지(별첨 2), 워크샵 자기 평가서(별첨 3), 교회음악워크샵 기관의 평가서(별첨 4)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해당 학기의 기말고사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2) 방학 중에 워크샵을 할 경우

- a. 교회음악워크샵 기관·단체를 먼저 정하고,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과사무실에 교회음악워크샵 신청서(별첨1)를 제출한다.
- b. 워크샵 후에는 성적평가에 필요한 학생의 워크샵 일지(별첨 2)과 워크샵 자기 평가서(별첨 3), 교회음악워크샵 기관의 평가서(별첨 4)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한다. (방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c. 개강 후,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한다.
- d. 수강신청 후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기본교육을 2-4시간을 받는다.
- e. 방학 중의 교회음악워크샵은 방학 직후 한학기에 한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즉, 겨울방학 중의 워크샵은 다음 학년도 1학기에만 인정되고, 여름방학 중의 워크샵은 같은 해 2학기에만 인정된다.

3. 성적평가

1) 성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a. 기본이론교육: 10%
- b. 학생의 교회음악워크샵 일지: 20%
- c. 학생의 교회음악워크샵 자기 평가서: 20%
- d. 교회음악워크샵 기관의 평가서: 50%

* 기본이론교육은 워크샵 전의 경우는 실습에 관한 기본교육을 말하며, 워크샵 후의 경우는 워크샵 결과보고 프리젠테이션을 포함한다.

2) 성적평가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F로 처리한다.

- a. 기본교육: 2-4시간 중 1시간이라도 결석할 경우
- b. 워크샵 시간: 26-28 시간 중 4시간 이상 결석한 경우
- c. 워크샵 일지/자기 평가서: 워크샵 일지와 자기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d. 교회음악워크샵 기관의 평가서: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가 F인 경우

3)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교회음악워크샵 기관의 담당자는 F로 평가한다.

- a. 무단결석 2회 이상일때
- b. 지각 4회 이상일때
- c. 성의없는(또는 불량한) 태도가 3회 이상 체크되었을 때
- d. 기타 사유로 도저히 성적을 줄 수 없는 학생으로 판단되었을 때

4. CMW(교회음악워크샵) 인정내용

- 1) 본교와 자매결연 외국대학에서 개최한 Master Class 참여
- 2) 본교와 파트너십 협력관계를 가진 외국대학의 Master Class (국외) 및 교수초빙 Master Class (국내) 참여
- 3) 외국대학에서 개최하는 Master Class 참여 (모든전공)
- 4) 우수한 Music Festival 참여
- 5) 학과가 인정하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Master Class 참여

31. 신학대학원 무시험 전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무시험 진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1.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교목, 해당 학과장으로 한다.
2.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직능) 위원회는 본교 재학생중 신학대학원 무시험 입학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한다.

제4조 (자격)

①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무시험 전형 자격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라야 한다.

1. **4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자로서** 4학년 2학기(동계학기 제외) 수강신청 과목을 포함하여 졸업가능한 자.
단, 헬라어와 히브리어 과목은 4학년 2학기(동계학기 제외)내에 각 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또는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2.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평균평점 3.50 이상인 자.
3. 재학기간 중 투철한 소명감과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한 자.
4. 무시험전형 추천 후 신대원 특별전형(면접)전까지 본 교단 목사후보생 고시에 합격한 자.
단, 여학생은 본 교단소속 교인인 자.
5. **정상학기 내** 졸업할 수 있는 자. 또는, 당해연도 후기졸업자로서 **정상학기 내** 졸업한 자.
6. 편입생은 편입한 후 **4학기 내** 졸업할 수 있는 자와 당해연도 후기 졸업한 자로서 **4학기 내** 졸업한 자.
7. 조기졸업(대상)자는 헬라어, 히브리어 과목을 각 6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85 이상인 자.
8. 신학대학원 무시험입학 예정학년도 3월1일을 기준하여 수세 후(단, 유아세례자는 입교 후) 4년 이상 경과한 사람.
9. 재입학생은 재입학 후 남아 있는 정상학기 내 졸업할 수 있는 자 또는 당해연도 후기졸업자로서 정상학기 내 졸업한 자.

② 총회신학원 연구과정 무시험 전형자격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라야 한다.

1. 교회음악과 졸업예정자. 단, 졸업예정자가 추천정원에 미달될 시에는 졸업자로 선발한다.
2. 4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자로서 4학년 2학기(**동계학기 제외**) 수강신청 과목을 포함하여 졸업 가능한 자.
3. 평점평균 2.50 이상인 자.
4. 재학기간 중 투철한 소명감과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한 자.
5. 본 교단 목사후보생 고시에 합격한 자. 단, 여학생은 본 교단소속 교인인 자.
6. 총회신학원 무시험입학 예정학년도 3월1일을 기준하여 수세 후(단, 유아세례자는 입교 후) 4년 이상 경과한 사람.

제5조 (학점인정)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4학년 2학기 수강신청시 재수강 신청으로 인하여 삭제된 과목의 성적을 포함하여 평균평점을 산정한다.
2. 편입생의 경우에는 본교에서 이수한 성적의 평균평점으로 산정한다.
3. 학점포기자의 경우 학점포기 전의 성적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절차) ① 무시험 전형 신청기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교무과에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혹은 총회신학원) 무시험전형자 추천 신청서
2. 당회장추천서(밀봉하여 제출)
3. 성적증명서

② 각 학과별로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자를 확정하고 신학대학원에 추천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199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① 본 규정은 199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① 본 규정은 199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① 본 규정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본 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본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본 규정은 200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① 본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본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① 본 규정은 200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① 본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1항 제6호는 경과조치로 2012학년도 신대원 무시험추천 전형대상자부터 적용한다.

32. 학점 특별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45조에 따라 학점 특별인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교에 학점 특별인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은 교무처장, 교양교직과장, 영어교육과장 및 관련 학과장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은 위원장이 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점의 특별인정 대상과목 선정과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 ② 각종 외국어시험의 Pass 점수 확정 및 관련 과목 여부에 관한 사항
- ③ 학점 특별인정 시험에 관한 제반사항
- ④ 기타 학점 특별인정에 관한 제반사항.

제4조 (인정과목 및 학점의 제한) 대학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한다.

제5조 (인정대상) ① 외국어 관련과목의 인정대상은 [별표1]과 같다
② 컴퓨터 관련과목의 인정대상은 [별표2], [별표3]와 같다.

제6조 (신청기간) 매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학점 특별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학점산정) 학점 특별인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해당 학기 수강 학점수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만 산입한다.

제8조 (성적인정) 제4조에 의해 학점을 특별인정 받은 과목의 성적표기는 B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9조 (학점 특별인정 시험) 학점 특별인정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시험일시, 장소, 해당과목, 성적인정 방법 등을 공고한 후 실시한다.

[별표1]

과목명	인정대상
실용영어 I,II	학교에서 시행하는 학점특별인정 시험에 응시하여 Pass한 자
실용영어 III,IV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로서 학교에서 시행하는 학점특별인정 시험에 응시하여 Pass한 자 1. 외국(영어권)에서 2년 이상 중등과정 을 이수한 자 2. 외국(영어권)에서 1년 이상 대학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대학과정에 준하는 어학연수를 이수한 자 3. TOEIC 900점 이상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TOEFL, TEPS, G-TELP, IELTS 점수를 취득한자. 단,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
실용영어청해 I,II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학교에서 시행하는 학점특별인정 시험에 응시하여 Pass한 자 2. TOEIC 850점 이상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TOEFL, TEPS, G-TELP, IELTS 점수를 취득한 자. 단,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
TOEFL특강	TOEFL IBT 95점 이상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TOEFL, TEPS, G-TELP,IELTS 점수를 취득한 자. 단,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취득한 성적에 한한다.

[별표2] 한 과목 3학점(컴퓨터개론, 멀티미디어개론 중 선택)인정할 경우

구분	컴퓨터개론 또는 멀티미디어개론 (3학점)			
	A+	Ao	B+	Bo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처리기능사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처리기능사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MOS : Expert 2개 MOS : Expert 1개 이상 + Core 2개 이상 (단,동일Office 중복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MOS : Core 3개 필수 (Word,Excel,Power Po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MOS :Core 아래3개중 2개 (Word, Excel, Power po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e-Test Professional - 1급(860점 이상) 변경e-Test Professional - 1급(92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e-Test Professional - 2급(730~859점) 변경 e-Test Professional - 2급(82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e-Test Professional - 3급(620~729점) 변경 e-Test Professional - 3급(72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e-Test Professional - 4급(520~619점 이상) 변경e-Test Professional - 4급(600점 이상)

[별표3] 두 과목 6학점(컴퓨터개론, 멀티미디어개론) 인정할 경우

구분	컴퓨터개론 또는 멀티미디어개론 (3학점)			
	A+	Ao	B+	Bo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프로그래밍 전문가 • 멀티미디어 콘텐츠전문가 			

- 부 칙
- ①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본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본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본 규정은 200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본 규정은 2010학년도부터 폐지하되, 재학생들은 2012학년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 부 칙
- ① 본 규정은 2009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33. Tutor제 시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적, 정신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대학에서의 학습활동과 생활적응에 곤란을 겪는 자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튜터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튜터라 함은 튜터를 자원한 학생 중 위원회에서 선발한 Student Tutor (학생 개인교사)를 말한다.

제3조(튜터의 대상) 튜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학생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2. 재외국민 또는 재외국민 자녀
3. 만학도
4. 장애인
5. 새터민

제4조(튜터의 자격, 역할, 특전) ① 튜터는 대상자와 동일한 전공 또는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자로서 튜터를 자원하여 신청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 튜터는 한 학기(12주 기준)동안 일 주일에 1회 이상을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1:1로 만나 1시간 이상 해당과목의 학습을 도와주고, 매회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튜터에게는 동일한 전공 또는 교양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가산점을 준다.

④ 튜터 가산점은 2개 과목에 한한다.

제5조(튜터제 운영위원회) 튜터의 활동내용을 심사하고, 가산점 부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처에 튜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② 교무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신학과장, 교양교직과장, 영어교육과장, 해당 학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튜터의 활동보고서를 심의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위원회는 이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회는 매 학기 기말고사기간 이후 성적보고서 입력기간 전에 회집한다.

② 기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해당 전공 또는 교양과목의 담당교수가 된다.

② 지도교수는 수준별 지도를 요하는 자에게 튜터를 추천하여 연결시켜 준다.

③ 지도교수는 담당과목의 튜터를 관리·지도하며, 위원회에서 부여한 가산점을 성적에 반영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초기에는 교양영어과목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4. 국내·외 대학과 학생 교류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 제51조에 의하여 국내·외 타 대학(이하 “타 대학 등”이라 한다)과의 수학에 따른 학생교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와 학술·학점교류협정을 맺은 타 대학과 본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대학에서 교육받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자격) ① 타 대학 등에서의 수학 자격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되, 편입학생은 제외한다.

② 외국대학 수학 및 교환학생 지원자격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학기(36학점)이상 이수한 자.
2. 실천 및 영적지도자 훈련 성적을 취득한 자.
3. 평점평균 3.50이상인 자.
4. 토플 등 외국어 성적 또는 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
5.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③ 국내 대학교와의 학점 교류는 해당 대학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 2 장 지원 및 선발

제4조(지원시기) 재학생의 타 대학 수학지원 시기는 매 학기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5조(지원서류) 재학생은 아래 서류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소정양식)
2. 수학계획(과목) 확인 및 추천서
3. 성적증명서

제6조(추천 및 선발) ① 학과장은 지원서류를 검토한 후 추천대상학생을 학과 교수회에서 선발하고 교무처장을 통하여 총장에게 추천 의뢰한다.

② 총장은 수학희망 타 대학 등의 장에게 수학 추천을 한다.

제7조(휴학생의 타 대학 수학 금지) 휴학생은 국내·외 타 대학 등에서 수학할 수 없다.

제 3 장 이수성적 인정

- 제8조(인정절차)** ① 타 대학 등에서 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즉시 수학한 대학 등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학대학에서 총장에게 이수성적을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학과장은 타 대학 등에서 당해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성적사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학과장은 제출된 성적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성적을 사정한 후 교무처장을 통하여 총장에게 학점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단서에 의한 경우에는 총장이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교과구분 중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의 인정여부는 제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해당 학과장이 재사정할 수 있다.

제9조(인정방법) ① 교과구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타 대학 등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은 교양으로만 인정한다.
2. 본 대학의 학과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과목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타 대학 등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우리대학의 교직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이수한 교과목 중 교과구분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출된 관련자료 등을 참조하여 학과장이 결정한다.

② 학점은 우리대학의 학기 당 수강신청 가능학점 또는 교류 협정서에 명시된 학점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타 대학 등에서 이수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한다.
2. 타 대학 등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성적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백분위 성적을 우리대학 등급성적으로 환산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타 대학 등에서 이수한 성적이 상대평가로 인하여 백분위 성적과 등급 성적이 불일치할 경우 수학대학의 등급성적을 기준으로 백분위 성적을 재산출하여 우리대학의 등급 성적으로 환산한다.
3. 타 대학 등에서 이수한 등급성적의 백분위 점수가 일정범위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 중간 점수 또는 중간상위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대학의 등급성적으로 환산한다.

④ 교과목명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국내 타 대학 등에서 이수한 교과목명은 그대로 인정한다.
2. 외국의 대학 등에서 이수한 교과목명은 한글 및 영어로 번역하여야 하고, 한글교과목 명이 지나치게 길 경우 10자 이내로 줄여 의역한다.

⑤ 타 대학 등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성적증명서에 이수국 명과 대학 명을 표기한다.

⑥ 본 대학교의 정책과목 신약(4학점), 구약(4학점), 칼빈주의(4학점)는 본교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제10조(동일과목의 처리) ① 타 대학 등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교과 구분 및 교과목 명이 동일할 경우 동일과목으로 인정하며, 먼저 이수한 교과목을 삭제한다. 다만, 외국의 대학 등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과장이 관련자료 등을 참조하여 동일과목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타 대학 등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교과구분이 같고 교과목명이 유사한 경우 학생의 신청에 의하여 학과장의 동일과목임을 확인 받아, 먼저 이수한 교과목을 삭제할 수 있다.

제 4 장 등록 및 학적

제11조(수학기간) 타 대학 수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이 기간 동안에는 휴학할 수 없으며 학위취득 학기는 본 대학교에서 마쳐야 한다.

제12조(재학생) 타 대학 등에서 수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우리대학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타 대학 수학기간 동안 재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교의 학칙 및 학사내규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3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외국대학 교환학생에 대한 규정’은 폐지한다.

35. 졸업인증제 시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총신대학교 학칙 제53조 및 학사내규 제57조에 의거하여 졸업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인증의 정의) 졸업인증제라 함은 날로 국제화, 전문화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한 영역에서 소정의 실력이 공인된 자를 졸업의 요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졸업인증의 적용범위) 졸업인증은 영어와 성경실력을 근간으로 한다. 단, 영어실력 인증은 교회음악과를 제외한 전 학과생에게 적용하며, 성경실력 인증은 신학과생에게만 적용한다.

제4조(영어인증) ① 영어실력 인증은 졸업 전까지 공인된 시험을 통하여 인증받아야 하며, TOEIC을 기준으로 영어교육과 700점, 기타 학과는 60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TOEIC 외에도 본교가 인정하는 공인된 시험 및 취득하여야 할 점수는 다음과 같다.

TOEIC	New TOEIC				TOEFL			TEPS	PELT (main)	PELT(plus)			G-TELP	IELTS
	Speaking (level)	Scaled Score	Writing (level)	Scaled Score	PBT	CBT	IBT			Speak ing	Writ ing	Total		
700	5	130	7	140	561	<u>203</u>	<u>79</u>	572	<u>302</u>	<u>111</u>	102	<u>213</u>	Level 2-62 Level 3-84	6.5
600	5	110	6	120	<u>500</u>	<u>163</u>	<u>57</u>	476	<u>240</u>	<u>77</u>	<u>79</u>	<u>156</u>	Level 2-50 Level 3-70	5.5

- ③ 재학 중 상기 성적을 취득한 후 성적표를 제출함으로써 합격(Pass) 처리한다.
- ④ 성적은 입학일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⑤ 졸업인증에 관한 학적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공인시험명	학 기	성 적
졸업인증	(영어/성경)	(취득학기)	Pass/Fail

- * 인증과목에는 영어 또는 성경을 표기하되 영어는 성적을 취득한 시험기관(예/TOEFL)을 표기
- * 학기는 성적표를 제출한 학기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를 표기

제5조(성경인증) ① 신학과 학생(부전공자와 다전공자를 포함한다)은 졸업 전까지 영어외에 성경시험에 응시하여 실력을 인증받아야 한다.

- ② 성경시험은 구약과 신약에서 출제하고, 60점 이상을 취득한 때에 합격(Pass)으로 인정한다.
- ③ 성경시험은 신학과 교수회의에서 위원을 선정하여 출제하되, 위원은 매 학기 교체한다.
- ④ 성경시험은 매 학기 4월과 10월에 학사일정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6조(학점처리) 영어 및 성경시험은 해당성적을 취득하여 제출한 학기에 학점 없이 합격(Pass) 처리한다.

제7조(예외사항)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영어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
2. 탈북자(새터민)
3. 중국인교포(조선족)
4. 만학도(특별전형자에 한함)
5. 경력자 특별전형 입학생
6. 기타 고교 교육과정에서 영어과목이 제외된 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신학과의 성경시험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05학년도에 입학한 편입생은 영어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6. 단기해외연수 안내

1. 목적: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 향상과 해외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함임.
2. 정의: “단기 해외연수”라 함은 본교의 재학생이 하계방학이나 동계방학 기간 중에 본교가 인정할 수 있는 해외의 대학이나 기관에서 받는 어학연수 또는 문화연수를 말한다.
3. 학점인정: 단기 해외연수를 마친 학생은 『어학연수』(교선, 2학점) 또는 『해외문화탐방』(교선, 1학점) 중 1과목을 학점인정 받을 수 있다. 단 학점은 P/F로 표기한다.

단기 해외연수를 통한 취득인정 학점은 재학 중 총 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격: (1) 『어학연수』(2학점) - ①최저 4주 이상의 기간동안 총48시간 이상의 어학연수를 받고, 연수기관에서 발행한 이수증명서를 제출한 자
②위원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정규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자
(2) 『해외문화탐방』(1학점) - 최저 1주 이상의 해외문화연수를 실시하고 소정의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5. 시행시기 : 2005학년도 제1학기부터
- ☞ 이미 단기 해외연수를 마쳤거나, 현재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계획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할 자료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미리부터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
6. 절차: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한 후, 『어학연수』교과목 수강자는 연수기관에서 발행한 이수증명서를, 그리고 『해외문화탐방』교과목 수강자는 소정의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함.

7. 제출서류 :

- 1) 어학연수-연수기관에서 발행한 이수증명서
- 2) 해외문화탐방-보고서(A4 용지 2매정도), 증빙서류(문화탐방을 입증할 수 있는 브로슈어, 사진, 영수증 중) 2가지 이상 첨부
- 3) 공통서류-여권사본 2부(신분사항면, 국제공항 출입국 도장 찍힌 면)
<서류제출시 여권 제시하여야 함>

37. 전과 안내

1. 전과대상 : 2학년 또는 3학년 재학생으로서 학기당 평균 16학점(2007학번까지는 17학점)이상 취득하고, 총평균평점 2.50이상인 자로서 일반학과에서 교육계열학과로 전과시에는 학과별 입학정원의 20%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단, 특기자로 특별전형입학자와 편입학한 자는 전과대상에서 제외되며 4학년 전과는 할 수 없음).
2. 전과가능횟수 : 전 재학기간 중 1회에 한정한다.
3. 신청기간 : 매 직전학기중 해당 신청기간 내
4. 제출서류 : 전과신청서, 성적증명서 각1부
 ★신학과 전과시 추가서류▶당회장추천서, 노회장 추천서(단, 여학생은 당회장추천서만 제출할 것)
5. 전형절차 :
 -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2) 직전학기 성적확인 및 해당학과로 제출된 서류배부
 - 3) 해당학과별 전형일자 개별통보(해당학과→신청자) 및 전형실시
 - 4) 전형결과 확인 후 전과승인통지문 개별통보(교무과→신청자)
6. 학과별 전과예정인원 및 전형방법 :

학과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유아교육과	교회음악과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인원	제한없음	일반학과 (5명) 사범계 (제한없음)	일반학과 (6명) 사범계열 (6명)	일반학과 (6명) 사범계열 (6명)	일반학과 (10명) 사범계 (제한없음)	약간명	약간명	5명 내외
전형방법	교과성적 50% 구술시험과 면접(50%)	면접 (50%) 교과성적 (50%)	교과성적 (50%) 구두면접 (50%)	구두면접	면접 (10%) 성적 (40%) 전공시험 (50%)	실기 / 실기과제 별첨	교과 성적 / 면접	교과성적 (50%) 면접 (50%)

7. 전과인정학년학기 :

▶전과가 가능한 해당학년학기는 아래의 표에 의거하며 전과직전 학년학기에 해당하는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다음 학년학기로 전과가 가능함.

학년학기		1-1	1-2	2-1	2-2	3-1	3-2	4-1	4-2
이수학점	2007학번이전	17	35	52	70	87	105	122	140
	2008학번이후	16	32	48	65	81	97	113	130

8. 교회음악과 전과 실기 과제 :

전 공	과 제 곡	비고
성 악	① 이태리 가곡 1곡(원어로) ② 독일 가곡 1곡(원어로)	
피아노	① Liszt Etude 1곡 ② Beethoven Sonata 1곡 전악장 ③ 낭만시대곡 1곡(10분 내외)	
오르간	① 바흐 Fuga & Prelud 중 택1곡(Little Bach P&F 제외) ② 자유곡 1곡	2곡 중에 1곡 암기
작 곡	① 작곡 : 주어진 동기에 의한 세도막 형식의 피아노 소품 작곡 ② 화성풀이 : 전통화성 전반에 걸친 화성풀이 ③ 피아노 : 자유곡 1곡	
지 휘	① 면접	
관현악	① 콘체르토 또는 소나타의 빠른 한 악장	
(주의사항) 1. 반주자는 지원자가 동반하여야 함 2. 오르간을 제외한 모든 전공은 암보로 연주한다.		

9. 유의사항 :

- 1) 학과별 전과예정인원에 응시자가 미달되어도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불합격 판정할 수 있음.

●전과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학생의 소속학과 변경 (이하: 전과)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과의 시기)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2학년 또는 3학년 학기초 30일 이내에 허가 할 수 있다.

제3조 (조건) 전과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허가 한다.

- ① 일반학과에서 교육계열의 학과로 전과할 때에는 학과별 입학정원의 20% 범위안에서 허가 할 수 있다.
- ②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학기당 **평균 16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총평균평점이 2.50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공과목을 이수하기에 불가능한 신체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예능계열의 학과는 전과 및 전공변경이 가능하다.

제4조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과할 수 없다.

1. 특기자로서 특별전형으로 입한한 자
2. 편입학한 자

제5조 (절차) ① 전과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학기 개시전에 학과별 예정인원과 접수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소정의 전과원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학과장과 전입할 학과장의 승인을 득하여 전입할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전입학과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형절차를 통과하여야 한다.
- ③ 전입생의 학과장은 전형을 거쳐 전과 허가자를 결정한 후 그 명단을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 한다.

제6조 (학점이수) ① 전과생은 전입한 학과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이미 취득한 전공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하고 전과전 선택으로 취득한 학점 중 전입된 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제7조 (재학연한) 전과한 자의 재학 연한은 전과 이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부 칙

- ① 본 규정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경과조치로 제3조 2항의 개정된 규정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